



2022년 7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21.(목) 13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7. 21.(목)	담당부서	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
담당과장	한상덕 과장(044-203-5860) 이원희 과장(044-203-5870) 김기호 과장(044-203-5880)	담당자	김준철 사무관(044-203-5865) 구교영 사무관(044-203-5868) 한정선 사무관(044-203-5872) 이용욱 주무관(044-203-5877) 유수민 주무관(044-203-5887)

제426차 무역위원회, 반덤핑조사 예비판정

- 중국,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반덤핑조사 예비 긍정판정 및 5.08~46.71%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
-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 예비긍정판정 및 14.27~37.96%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
- 「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」 개시

□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장승화)는 '22. 7. 21.(목) 제426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,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을 하였고,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.

< 중국,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필름의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>

□ 우선, 무역위원회는 제이케이머티리얼즈(주)가 신청한 중국,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, 덤핑사

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기획재정부에 5.08~46.71%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무역위원회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,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.

○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('18년~'21년)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 동종물품의 시장점유율 하락,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.

○ 폴리아미드 필름은 연신가공된, 두께 25 μ m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*으로, 내열성, 내한성, 가스 차단성,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,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, 세탁세제,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.

* 금속 등의 증착,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
- '21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(약 2만톤 이내)에 달하고,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30%대, 조사대상물품이 약 60% 미만 기타국산이 10% 미만을 각각 차지하였다.

□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산 5.08~5.18%, 태국산 24.81%, 인도네시아산 46.71%이며,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.

○ 인도네시아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이 높은 것은 인도네시아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, 위원회가 관계법령*에 따라 조사신청서 등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하였기 때문이다.

* 관세법 시행령 제64조(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)

⑤기획재정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법 제52조의 조사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무역위원회의 조사를 거부·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가능한 자료 등을 사용하여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□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(2개월 연장가능) 국내외 현지실사,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.

<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>

□ 다음으로, 무역위원회는 케이씨(주)가 신청한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하여,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현지실사,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.

○ 예비조사 결과,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및 호주산을 포함한 조사대상 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, 조사대상기간('18년~'21년) 동안 수입물량이 증가하고, 매년 지속적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동종물품 대비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하락, 재고율 상승, 수익성 악화 등 경영지표의 악화를 초래한 바,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.

○ 금번 조사의 대상은 화학식 $Al(OH)_3$ 인 평균입도(Dp50)* 55 μ m 이상의 수산화알루미늄으로, 주로 수질정화처리제, 합성세제, 급결제, 제산제(制酸劑)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.

* 입자크기 분포를 나타내는 지표이며, Dp50은 입자분포의 중앙값(50%)을 의미함

□ 아울러,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산업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필

요하다고 판단하여, 중국산 14.27~21.05%, 호주산 37.96%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.

- 무역위원회가 금번 예비조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,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을 결정하게 된다.

< 마취크림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시 >

□ (주)비보존제약은 국내기업 “A社”가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마취크림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였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였다.

-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서 검토결과,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로 수출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.

□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~10개월 간 진행되며, 양 당사자에 대한 서면조사, 기술 설명회, 현지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.

- 만일,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,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.



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김준철 사무관(044-203-5865), 구교영 사무관(044-203-5868), 덤핑조사과 한정선 사무관(044-203-5872), 이용욱 주무관(044-203-5877), 불공정무역조사과 유수민 주무관(044-203-58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중국,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필름 조사(원심) 개요

□ 조사 개요

- 신청인 : 제이케이머티리얼즈(주)
 - * (대리인) 법무법인 와이케이, 우리회계법인 / '22.1.7 조사신청
- 조사대상공급자: 중국 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& Technology,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., Ltd., 태국 A. J. Plast Public Co., Ltd., 인도네시아 PT. KOLON INA 등 4개사
- 신청인 주장 덤핑률 : 중국 30.0%, 태국 40.4%, 인도네시아 47.6%
- 조사대상물품 : 폴리아미드 필름(Biaxially Oriented Polyamide Film)

- **(정의)** 연신가공된, 두께 25 μ m 이하의 폴리아미드 필름. 단, 금속 등의 증착, 다른 필름 등과 합지된 제품은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
- **(용도)** 내열성, 내한성, 가스 차단성, 인장강도 등이 우수하여 냉장,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, 세탁세제, 삼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
- **(분류)** 관세품목분류번호(HSK) : 3920.92.0000

□ 국내시장 현황

- 국내시장 규모('21년) : 약 2만톤 이내, 약 700억원대
 - * 시장점유율(물량) : 국내산 30%대, 조사대상물품 60%이내, 기타국산 10%이내

□ 공급자별 예비덤핑률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예비 덤핑률	대응 여부
중국	더저우동홍 (Dezhou Donghong Film Making Science & Technology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5.18%	대응
	효성자싱 (Hyosung Chemical Fiber (Jiaxing)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5.08%	대응
	그 밖의 공급자	5.12%	-
태국	에이제이피 (A. J. Plast Public Co., Ltd.)	24.81%	대응
	그 밖의 공급자	24.81%	-
인도네시아	코롱이나(PT. KOLON INA)	46.71%	미대응
	그 밖의 공급자	46.71%	-

□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

- 조사개시('22.2.28) →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회의('22.5.18) → 예비판정('22.7.21) → 공청회('22.9월) → 최종판정('22.12월)

참고 2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조사(원심) 개요

□ 조사 개요

- 신청인: 케이씨(주) * (대리인) 삼정KPMG / (조사개시일) '22.2.28.
- 조사대상공급자: 중국 Chalco, Nanshan, 호주 Alcoa 등 3개사
- 신청인 주장 덤핑률: 중국 39.97%, 호주 56.93%
- 조사대상 물품: 수산화알루미늄(Aluminum Hydroxide)

- **(정의)** 화학식 $Al(OH)_3$ 인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(水化物)이며, 입자크기의 중간값을 의미하는 평균 입도(Dp50)가 $55\mu m$ 이상인 수산화알루미늄
 - 단, 중국 찰코산동신소재 및 찰코중주신소재가 생산한 HC110A, HC110KK, H-WF-60-SP, H-WF-75, H-WF-75-SP, H-WF-90, H-WF-90-SP, H-WF-100, H-WF-50C-SP 모델로서 YS/T 469-2004(WB) 기준 백색도가 90 이상인 제품을 제외함
- **(용도)** 산·알칼리 모두에 잘 반응하고 내열성과 절연성이 뛰어나 다양한 산업에 응용되는데, 주로 수처리제(물 속의 부유물질을 응집·침전시키는 폴리염화알루미늄 등), 급결제, 합성세제, 제산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
- **(분류)** 관세품목분류번호(HSK) : 2818.30.9000
 - * 기본관세율 8%, WTO 협정세율 5.5%, 한-중국 FTA 3.5%, 한-호주 FTA 0%

□ 국내시장 현황

- 국내시장 규모('21년): 약 30만톤, 800억원
 - * 시장점유율(물량) : 국내산 30%대, 중국·호주산 40% 이내, 기타국산 30% 이내

□ 공급자별 예비덤핑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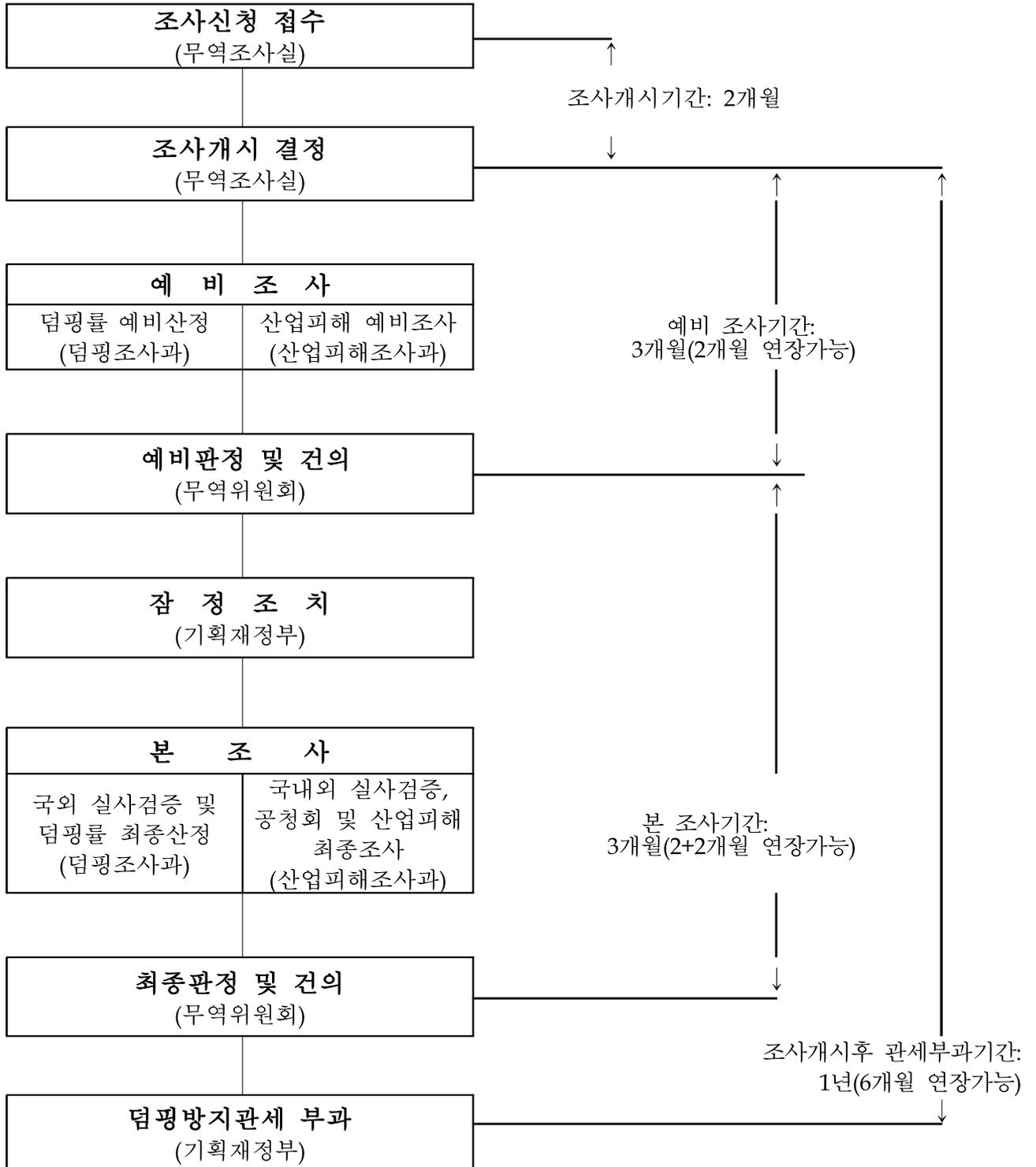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예비 덤핑률	대응 여부
중국	찰코산동(Chalco Shandong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14.27%	대응
	룽커우동하이(Longkou Donghai Alumina Co., Ltd.) 및 그 관계사	21.05%	미대응
	그 밖의 공급자	14.27%	-
호주	알코아(Alcoa of Australia Limited)	37.96%	대응
	그 밖의 공급자	37.96%	-

□ 조사 진행경과 및 향후일정

- 조사개시('22.2.28.) → 질의서 송부 → 산업피해조사 이해관계인회의('22.4.29) → 예비판정('22.7.14.) → 공청회('22.9월) → 최종판정('22.12월)

참고 3

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(원심) 절차도



참고 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도

